

【문40】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도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뿐만 아니라 채권자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 ②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나 이후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어 민법 제404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소극적 요건 중 하나인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이 당연히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 ①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제한대상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 해당하더라도 인터넷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③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④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 ⑤ 우편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42】증인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그 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혼인신고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나, 수리 당시에 발견하였다면 민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문43】다음 신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유언독음을 기재한 서면 첨부 가능한 경우는?

- ① 친권자 지정 신고
- ② 인지신고
- ③ 친양자의 입양신고
- ④ 사망신고
- ⑤ 입양신고

【 제2과목 50문제 】

②책형

【문44】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의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열거된 것은?

- ㄱ.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A)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ㄴ. 시·읍·면의 장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B)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ㄷ.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C)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B	C
①	10일	5일	5만 원 이하
②	10일	5일	10만 원 이하
③	10일	7일	5만 원 이하
④	14일	5일	5만 원 이하
⑤	14일	7일	10만 원 이하

【문45】다음 중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없는 것끼리 고른 것은?

- ㄱ.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 ㄴ. 통보자의 성명
- ㄷ.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촉탁을 한 법원
- ㄹ. 신고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의 자격
- ㅁ.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ㄴ, ㅁ

【문46】출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출생신고의 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4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상 불복절차 및 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위 ②항의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명령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이 한다.

【문48】다음 중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쪽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의 기록이 누락된 때
- ㄴ.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ㄷ.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
- ㄹ.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때
- ㅁ.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외국인의 인명이 우리나라 방식의 성명 배열이 아닌 해당 외국 방식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때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49】다음 중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첨부할 수 있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 ㄷ.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 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 ㄹ.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ㅁ.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ㅂ.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 ㅅ.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① ㄱ, ㄴ, ㄹ, ㅁ, ㅅ
② ㄱ,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문50】다음 중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여기서 등록부의 정정허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함)?

- ①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 등록부의 정정 허가
- ② 개명 허가 - 귀화 허가
- ③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허가 - 등록부의 정정 허가
- ④ 협의상 이혼의 확인 - 개명 허가
- ⑤ 개명 허가 - 등록부의 정정 허가

2024년 8월 31일 시행

제30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제 2 교시>

문제책형	시험과목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
②		

응시자 준수사항

-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지사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정답가안 공개** : 2024. 8. 31.(토)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이의제기**
기간 : 2024. 9. 2.(월) 12:00 ~ 2024. 9. 4.(수) 17:00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 최종정답 공개** : 2024. 9. 11.(수) 12:00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